

합병종료보고의 공고

주식회사 두산은 상법 제 527 조의 3 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2018 년 4 월 26 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, 두타몰 주식회사는 상법 제 527 조의 2 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2018 년 4 월 26 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, 주식회사 두산이 두타몰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하는 것에 대하여 각각 승인을 득한 후 채권자보호를 위한 1 개월의 공고 등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완료하였으며, 2018 년 6 월 4 일 주식회사 두산의 이사회에서 상법 제 526 조 제 3 항에 의거하여 본 합병 종료보고의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두산과 두타몰 주식회사 간의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본 공고로써 보고합니다.

- 아 래 -

1. 합병내용

가. 합병당사회사

- 존속회사 : 주식회사 두산
- 해산회사 : 두타몰 주식회사

나. 합병비율 및 합병신주

- 주식회사 두산 : 두타몰 주식회사 = 1 : 0
- 합병신주 발행 없음

다. 합병 후 자본금 : 134,845,735 천원 (합병에 따른 자본금 변동 없음)

라. 합병기일 : 2018 년 6 월 1 일

2. 합병진행경과

- 2018 년 3 월 16 일 : 합병이사회 결의
- 2018 년 3 월 22 일 : 합병계약체결
- 2018 년 4 월 3 일 : 소규모합병 공고
- 2018 년 4 월 26 일 : 합병계약서 승인 이사회 결의
- 2018 년 4 월 27 일 :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
- 2018 년 5 월 28 일 : 채권자 이의제출 마감
- 2018 년 6 월 1 일 : 합병기일
- 2018 년 6 월 4 일 : 이사회결의(합병보고주주총회를 공고로 갈음)
- 2018 년 6 월 4 일 : 합병종료보고 공고

3. 채권자 이의신청 : 주식회사 두산, 두타몰 주식회사는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없음.

4. 합병등기 예정일 : 2018 년 6 월 5 일

2018 년 6 월 4 일

주식회사 두 산

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 가 18-12

(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75)

대표이사 동 현 수